

「2022년 연안안전지킴이」 추가모집 공고

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「2022년 연안안전지킴이」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모집 기간: 2022. 6. 30.(목) ~ 7. 4.(월)
- 사업 명칭: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안전지킴이
- 운영 기간: 2022. 7. 8. ~ 10. 31.
- 모집 인원: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 연안안전지킴이 3명 (예비인원 1명 포함)
- 지원 자격(선발 대상)
 -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

〈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〉

- ① 아동 · 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(미수 포함)
- ② 국가 · 지자체 ·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(동일시간, 전일제) 참여자
- ③ 지원서,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 제출자

□ 신청 서류

- ① 필수 제출: 지원서, 사진 2매, 개인정보동의서 2부
- ② 선택 제출: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, 자격증 등(서류심사 기준표 참조)

* 선발대상자에 한해 '채용신체검사서(병원장·보건소장) 제출

- 활동비·시간: 월522,120원 / 주말 4일(1일 4시간), 평일 11일(1일 3시간), 월 15일
- 문의처: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☎ (061)-840-2448

2022. 06. 30.



여수해양경찰서장



2022년 연안안전지킴이 추가모집 안내문

모집 요강

- 연안안전지킴이 임무: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·지도활동 등
- 모집 인원: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 연안안전지킴이 3명 (예비인원 1명 포함)
- 운영 기간: 2022. 7. 8. ~ 2022. 10. 31.
- 활동 시간: 주말 4일(1일 4시간), 평일 11일(1일 3시간), 월 15일 / 월 522,120원
- 지원 자격

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 지역주민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

※ 결격사유: 성범죄 경력자, 동일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(지자체)·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

지원방법 및 선발

- 지원 기간 : 2022. 6. 30.(목) ~ 7. 4.(월)
- 접 수처 :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
- 제출 서류
 - 1. 필수 제출 : ① 지원서(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파출소 비치) ② 사진2매
③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2부, ④ 제출 시 주민등록증 확인
 - 2. 선택 제출 : ⑥ 해양안전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, ⑧ 관련 업무경력증명서
- 선발 방법: 서류심사, 체력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고, 심사평가표(심사기준)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
- 문의처: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☎ (061) 840-2448

심사 기준

|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| | 배점 | 점수 |
|--|--|------------|----|
| 1. 서류심사 평가 | | 40 | |
| 가. 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(1개당 10점, 최고 20점까지) – 선택제출 1번 | | 20 | |
| 나.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(1개당 5점, 최고 10점까지) – 선택제출 2번 | | 10 | |
| 다. 관련 업무 경험 – 선택제출 3번 | 경찰·군인·소방·교정(10) | 없음(5) | 10 |
| 2. 체력검사 평가 | | 30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찰관서 측정 | ▶ (종목: 3개) 악력 측정, 30초 앉았다 일어나기, 보행 상태 ▶ (최종 점수) 3개 종목 점수 합산 | 30 | |
| 3. 면접 평가 | | 30 | |
| 가.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 | | 10 | |
| 나. 지킴이 활동 적합성·성실성 | | 10 | |
| 다.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열의 | | 10 | |
| 합 계 | | 100 | |

선택제출 서류 기준

제출 원칙: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, 해양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서류 기준충족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

1. 취업취약계층 대상 기준(①~⑤)에 한하여 인정)

- ① 저소득층 ② 여성가장 ③ 북한이탈주민 ④ 결혼이주자 ⑤ 장기실직자에 한하여 인정

<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 확인자료>

| 대 상 | | 확인 자료(1개만으로도 인정)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저소득층 | 기초생활수급자 | ◦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 | |
| | 의료급여수급자 | ◦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| |
| | 차상위계층 해당자 | ◦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차상위 계층 확인서 · 자활근로자 확인서 ·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·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(주민자치센터),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등 | |
| ②여성가장 | 배우자 無 | ◦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| |
| | 배우자 有 | 가출·행방불명 | ◦ 실종신고서 |
| | | 장애 | ◦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|
| | | 질병 | ◦ 의사의 진단서 |
| | | 군복무 | ◦ 복무확인서 |
| | | 학교 재학 | ◦ 재학증명서 |
| | | 교도소 입소 | ◦ 수용증명서 또는 형확정판결문 |
| | | 이혼소송 제기 | ◦ 이혼소송확인서 |
| ③북한이탈주민 | | ◦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| |
| ④결혼이주자 | | ◦ 혼인관계증명서(다문화가정),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| |
| ⑤장기실직자(6개월 이상) | | ◦ 주관부서에서 워크넷, 일모아시스템 등 확인 | |

* 유의사항 : 기초연금·기초노령연금 수급만으로는 '저소득층' 인정이 어려움

·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

- “가구원수”에 따라, “가구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, 기준 중위소득65% (1인가구 120%) 이하로 판단
 <예시> 2인가구 직장가입자: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,447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 ⇒저소득층에 해당

<22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, 기준 중위소득 65%> ※ 출처: 보건복지부
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합계 |
| 1인 | 2,334,000 | 82,112 | 36,122 | |
| 2인 | 2,119,000 | 74,447 | 23,682 | 75,079 |
| 3인 | 2,727,000 | 95,330 | 62,567 | 96,204 |
| 4인 | 3,329,000 | 116,785 | 106,456 | 118,045 |
| 5인 | 3,916,000 | 137,178 | 129,070 | 138,878 |
| 6인 | 4,490,000 | 157,050 | 156,445 | 158,787 |
| 7인 | 5,057,000 | 177,454 | 184,453 | 180,075 |
| 8인 | 5,625,000 | 196,955 | 208,798 | 200,004 |
| 9인 | 6,193,000 | 219,871 | 238,263 | 223,722 |
| 10인 | 6,761,000 | 240,332 | 263,638 | 244,759 |

·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판단방법

- 공공 취업알선기관(고용센터,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)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자
- 청년(만15~34세)의 경우 ① 최근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자
 ※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
- 일모아 시스템에서 자동 판단·제공 되나, ①워크넷(또는 *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)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청년은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**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
 - * 고용센터, 장애인고용공단, 여성새로일하기센터,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
 - **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필요

2. 인명구조자격증 등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

-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불문, ‘수상레저’, ‘수중레저’, ‘인명구조’, ‘수상구조’, ‘잠수’, ‘응급처치·구조’ ‘안전관리’ 등 해양안전과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포함, 해양안전 (연안안전)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

<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예시>

잠수기능사 · 산업기사 · 기능장,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.2급, 요트조종면허, 해기사면허, 수상구조사, 응급구조사1.2급, 인명구조요원강사, 인명구조요원, 응급처치자격증 등

- (유의사항) ‘업무경험 항목과 중복성 있는 자격증’ 및 ‘취득과정 단순 수료(증)’의 경우 인정 불가, 동일 명칭·주관 자격증은 1건만 인정

3. 관련 업무경험 기준 : ‘경찰·군인·소방·교정직’ 관련 경력증명서 제출

체력검사 관련 안내

- 체력검사 평가는 봉산파출소에서 진행되며, 지원자 중 일부는 당일 문진표 및 혈압측정 결과에 따라 일부종목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, 건강이 우려되는 지원자는 불참을 권장합니다.

< 체력검사 평가항목 및 기준 >

| 평가 항목 | 평가 기준 (PASS제) | 점수 부여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절대 악력 측정 | '남자 31.8kg', '여자 20.4kg' | 기준 충족 : 10점 |
| 나. 30초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| '남자 15회', '여자 14회' | 기준 불충족 : 7점 |
| 다. 보행 상태 검사 | 외관상 나타나는 보행상태 | 중도 포기 5점 |

- 세부체력 검사 일정은 별도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.

기타 참고사항

- 면접 및 체력검사는 7.5(화) ~ 7.7(목) 사이에 진행합니다.
- 세부일정 및 장소는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드리며,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이므로 지원서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모든 절차를 걸쳐 최종 선발이 되면,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위촉 전까지 '채용신체검사서(병원장·보건소장, 비용 2~4만원)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- 검사 결과 이상항목이 3개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촉이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

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지원자 (최종선발자 제외)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자가 부담합니다. 단,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14일 이후 자동 파기합니다.

□ 연안안전 예방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2. 6. 30.



여수해양경찰서장